

## 제4차 국제 경쟁정책 심포지움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월 16일과 17일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21세기 경쟁정책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차 경쟁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 심포지움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의 경쟁정책당국 책임자와 IBRD, UNCTAD 등 국제기구의 관련 고위 책임자 및 국내외 경쟁정책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경쟁정책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쟁정책의 전개방향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다.

회의는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 발표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제 1 회의

#### 정보화 및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경쟁정책

- 주제 발표자 : 코바식(조지 워싱턴대 법대 교수)  
우영수(하나로 통신 경영전략팀장)

#### 코바식(조지 워싱턴대 법대 교수)

첨단기술분야는 새로운 공정 및 신제품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법 적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특히, 관련시장의 정의, 시장지배력의 측정, 독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결정하는 데 많은 숙고가 필요하다. 신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기존기업의 시장지배력이 급속히 잠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신공정 및 신제품의 도입·개발가능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과거의 판매실적(Market Share)과 현재의 연구개발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복합적인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경쟁법은 경쟁을 유지하고 효율을 증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는 MS사 사건에서도 증명되었다. MS사 사건에서 미국 경쟁당국이 MS사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소프트웨어 산업구조를 경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테크 산업에서 경쟁정책은 새로운 아이디어의 진입(New Entry)을 자유롭게 하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빌 게이츠에 의한 MS사의 탄생은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미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정부의 진입규제가 많은 베트남이었다면 도저히 탄생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이테크 산업에서 경쟁정책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반경쟁행위 발생 초기에 정부의 개입(경쟁법 적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MS사는 제품개발 초기 잠재적인 경쟁자를 위협하여 자사 제품보다 나은 제품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으나, 적절한 조치없이 2년여의 시간이 흘러 지배적 지위가 고착화되었으며, 만일 초기에 MS사에 경쟁법이 적용되었다면 MS사 제품보다 훨씬 나은 제품과 신기술이 등장하였을 것이다. 둘째,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법 적용은 조사 초기부터 적절한 해결책(remedy)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위반행위의 입증에만 관심을 갖을 경우 하이테크 산업의 신속한 변화속도 때문에 구제조치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셋째, 경쟁법 적용에 있어 하이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을 고려한 적절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 MS사 사건에 있어 MS사 분할, 소스코드 공개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경쟁당국이 시장분석과 시정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왔기 때문이며,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법 적용에 있어서는 시정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 우영수 박사(하나로 통신 경영전략팀장)

지식산업에서에 대한 경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경쟁정책은 지식의 신속한 창출, 지식 및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네트워크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기업결합은 허용하되 네트워크를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는 엄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효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정책도구를 개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sup>1)</sup>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여 단기적인 효율보다는 기술진보 등 장기적인 효율성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네트워크(지식) 외부효과 : 네트워크 망이 크면 클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현상



## 제 2 회의

### 경제구조조정과 경쟁정책

- 주제 발표자 : 하임러(이태리 경쟁위원회 경쟁법연구실장)

곤잘레스(멕시코 경쟁위원회 기업결합국장)

남일총(한국개발연구원)

#### 하임러(이태리 경쟁위 경쟁법연구실장)

최근 유럽에서는 규제개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규제와 경제 성장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기술의 발전속도가 과거와 다르고, 특히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서비스 산업의 경우 규제의 유연성이 창의성 발휘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장지향적인 규제개혁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규제와 직접 관계된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의 특수한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며 자신은 제외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규제개혁과 관련된 이러한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8가지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① 공공의사 결정 과정은 경쟁촉진이라는 목적하에 그 한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개혁은 다른 공공목적의 달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경쟁촉진의 목표는 모든 정부기관에 적용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④ 공기업 관련 규제개혁의 경우 구체적인 경쟁촉진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규제개혁은 기업의 모든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⑥ 규제개혁은 점진적으로 한 분야씩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⑦ 대상기업들은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행동인지 알아야 한다. ⑧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경쟁당국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 남일총 박사(KDI)

한국 경제구조의 기본적 문제점은 진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부재에 기인하는데,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효율성과 수익성을 상실한 구조하에서 운영되어 왔고, 금융시장이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지 못해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였다. 기업의 경우 낙후된 기업지배구조로 인하여 대규모의 비효율적인 투자가 초래되었으며, 특히 재벌가족은 사적인 이익추구에 치중했으며, 기업퇴출제도가 효율적이지 못하



였고 대규모 구제금융이 만연해 왔다.

한국정부가 IMF 이후 추진해 온 구조조정정책은 성공적이었으나, 아직도 공기업의 민영화와 기업퇴출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워크아웃의 경우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사주의 경영권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규모 공기업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지분매각만 이루어지고 경영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향후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정부는 상업적 베이스에서 작동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직접적인 개입을 중단하여야 하는데 특히, 금융·비금융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개입을 축소하고 자본시장과 장기금융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경제 전반에 걸쳐 경쟁정책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코잘레스(멕시코 경쟁위원회 기업결합국장)

멕시코의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는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미국 경제의 지속적 성장 등 대외적 여건도 중요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적정 수준의 재정적자 유지를 위한 긴축정책,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의 유지와 함께 시장경쟁 촉진정책의 일관된 추진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경쟁정책, 무역 및 투자 자유화, 공기업 민영화, 규제개혁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시장경쟁을 촉진시켰으며,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멕시코는 1,100개에 이르는 공기업을 100여개로 축소하였다.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는 공기업과 관련된 분야의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병행하였다.

1857년의 멕시코 헌법에 독점은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경쟁위원회는 1993년에서야 설립되었다. 경쟁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다. 경쟁법은 대기업·중소기업·사기업·민간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제 3회의

##### 경쟁정책과 세계화시대의 국제협력

- 주제 발표자 : 카카야(UNCTAD 경쟁정책 담당관)  
박노형(고려대 법대 교수)

### 카카야(UNCTAD 경쟁정책 담당관)

경쟁법·정책에 관한 협력활동이 양자·지역·다자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 중인데, 경쟁제한적 영업관행을 둘러싼 정부의 갈등을 회피하고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경쟁법 운영 경험의 적은 국가에 대한 경쟁법·정책의 채택, 개선, 강화에 대한 기술적 지원, 경쟁법·정책의 수렴 및 조화 증진을 위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

국제가르텔, 다국적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 경쟁제한적 영업관행은 개도국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개도국에 이익이다. 경쟁정책에 관한 선진국의 제도 및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함으로써 보다 균형 있는 협력이 가능할 것이며, UNCTAD의 “경쟁제한적 영업관행의 시정을 위해 다국간에 합의된 형평한 원칙과 규칙”과 향후 만들어질 WTO/다자간 경쟁규범 등이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경쟁정책의 도입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투명하고, 무차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경쟁법·정책의 채택, 개도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성 있고 점진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의 두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 박노형(고려대 법대 교수)

적극적 예양이란 다른 나라 영토에서 발생한 반경쟁적 행위가 자국에 영향을 미칠 경우 피해국이 자국법을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침해 발생국에게 그 영토 내에서 발생하거나 행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그 자체의 법을 적용해 당해 행위로 인하여 피해국에 입게되는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하도록 하는 것으로 1991년 미국/EU간의 협력협정의 협상과정을 통해서 적극적 예양(positive comity)이라는 신조어가 처음 탄생하였다. 그러나 적극적 예양이란 개념 자체는 OECD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권고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데, 1973년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적 사업관행 규제를 위한 회원국간 협력에 관한 OECD 보고』에서 최초로 규정되어 1986년 권고 및 이를 대체한 1995년 권고로 발전하였다. 1995년 미-캐나다 협정에서 예양의 의무성이 강화되었으며, 1998년 미-EU협정에서 적극적 예양이 핵심조항으로 등장하였다.

적극적 예양 개념은 경쟁법 집행에 관한 국가간 협력에 적용되는 중요한 일반원칙의 하나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적극적 예양 개념 자체만으로는 국제적 차원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에 충분히 대응하기 힘들고,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WTO/다자간 경쟁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 **□**